

## 비이민 국가로의 이민: 독일의 경험

홀거 콜브, 독일 뮌스터 대학, 이주 연구 및 상호문화학 연구소

독일은 경험적으로는 오래된 이민 국가였지만 이를 독일 역사상의 중요한 특성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글은 경험적 현실과 스스로 주장하는 입장 차이를 설명, 발견하고, 또 이러한 차이의 뿌리를 오랜 기간 불완전한 민족 국가였던 독일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분단과 동유럽에 분포한 많은 디아스포라(독일인 국외 집단 이주민)로 인해 독일은 오랫동안 국가 건설을 완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주와 통합에 대한 현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 독일 국가 형성을 이룬 결과로 이제는 (지금까지 독일이 스스로 이민 국가임을 거부했던) 부정의 기간도 끝났다. 결과적으로, 국가 건설을 완성한 후의 정상화 과정은 독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정상화 과정의 두 영역, 즉 정책과 법률은 이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008년 11월

독일과 독일의 이민 경험 사이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는 “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라는 문장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중심에는 독일이 비이민 국가라는 신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강조하는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950년부터 1993년까지 독일의 이주 인구수(입출국자수)는 전체 인구 성장의 80%에 달하는 1억 2천6백만 명이었다. 2005년에 실시한 미시적 인구 조사에 따르면, 8천2백만 명의 주민 중 외국 출생이거나 부모 중 한 쪽이 독일인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자가 1천5백만 명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가정 출신의 15세 이상 청소년이 미국보다 많다. 6세 이하 아동 집단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외국인 비율은 1961년 1.2%에서 1996년 8.9%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독일은 비이민 국가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찾고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독일의 다양한 이민 요소에 대해 먼저 개괄하고자 한다.

---

첫 번째는 1945년 이후 나타난 추방된 사람들, 난민, 독일계 이주민 집단이다. 오늘날 이들은 대부분 잊혀졌지만 아직도 의미 있는 집단이다. 1945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사이 1천2백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1949년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영토로 이주했다. 1950년 당시 서독 인구의 약 5분의 1이 난민과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서독은 사실상 이민 국가가 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독일 이민 요소의 두 가지 주요한 사회구조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45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사이  
1천2백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1949년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영토로  
이주했다.  
1950년 당시  
서독 인구의 약 5분의 1이  
난민과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

(1) 1949년 이후 독일의 정치 구조는 현대적 대중 정당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념이나 세계관에 근거하기 보다는 1940, 50년대 조직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운영된 두 주요 정당(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중 정당은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의 이익, 동기, 가치를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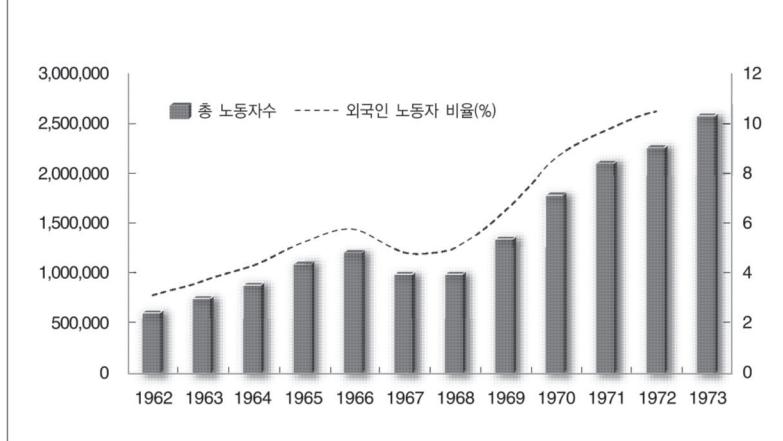
확히 하고 이들을 새롭게 제도화한 독일 민주주의의 구조 속에 두기 위해 이들 이질적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2) 난민과 추방된 사람들의 이주는 종교 분야의 재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독일의 분단으로 천주교는 기존의 소수자로서의 위치에 남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인구학적 재분배는 문화적·종교적 다중화 과정과 연결된 주요 도시 지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혼화(混化) 효과를 낳았다.

둘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에서 온 초청 노동자 집단은 독일의 이민 경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주로 1955년에서 1973년 사이에 임금이 낮은 비전문 직종에 고용되었다. 그런데 당시 독일 정부와 이주민 모두 초청 노동자들의 독일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행동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것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다. 1973년 고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2백 6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었고, 이들은 초창기부터 독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았다. 비록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실업 상태에 빠지기가 더 쉽지만, 독일에 온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통합은 굉장히 성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주 노동자와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 자녀는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의 10%를 구성하여, 독일 경제 안정의 요인이 되었다.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이 독일보다 실업자 집단에 이주민이 과도하게 많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에서 온  
초청 노동자 집단은  
독일의 이민 경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주로 1955년에서  
1973년 사이에 임금이 낮은  
비전문 직종에 고용되었다.

■ 초청 노동자 1962~1973



출처: Eryilmaz, Aytac: Wie geht man als Arbeiter nach Deutschland? In: Aytac Eryilmaz (Matilde Jamin (Hrsg.)): Fremde Heimat. Eine Geschichte der Einwanderung aus der Türkei. Essen 1998, S. 93-119.

았던 이웃 국가의 사례를 볼 때 독일의 경우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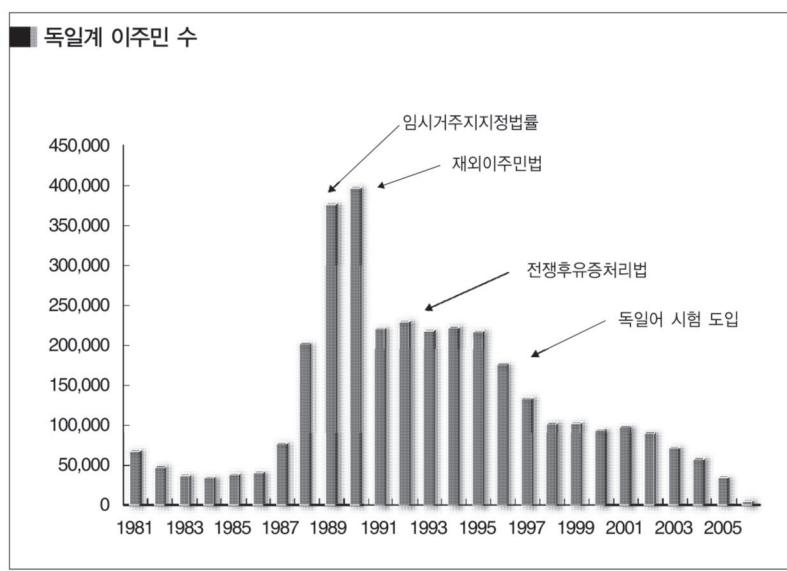
이 집단은 여전히 의미가 많은데 이미 언급한 경제적 측면 외에, 독일의 종교 생활에 미친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터키 출신 초청 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신도 3백 2십만 명의 이슬람교가 독일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 이들 무슬림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체 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같은 지배적인 종교와 같은 권리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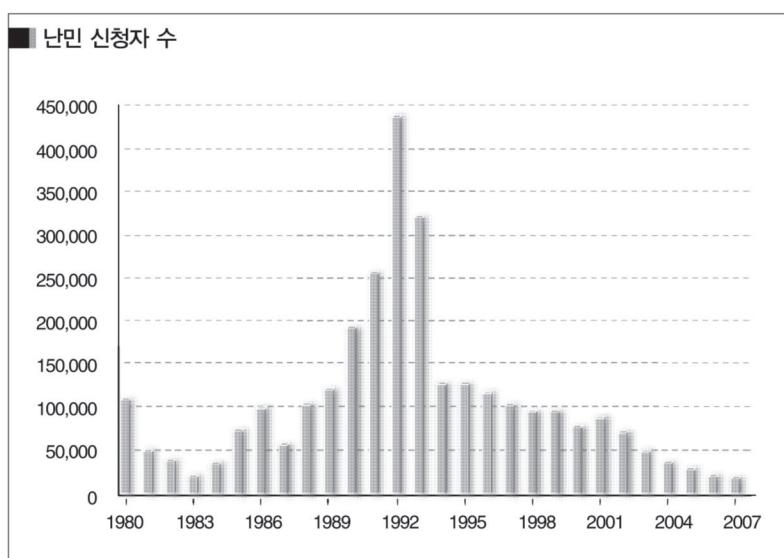
난민 신청자들이  
독일로 이주하게 된 주요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소요와  
동유럽과 동남유럽 지역의 갈등이다.  
독일의 난민 신청자 수가  
정점에 달한 1992년에는  
그 수가 43만 명에 이르렀다.

---

독일 이민 요소를 구성하는 세 번째 집단은 주로 독일계 이주민이다. 195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약 2백만 명의 독일계 이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는 다소 적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주민 집단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은 성공적이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후, 꽤 효과적으로 작동하던 이동 제한이 중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던 독일계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8년부터 1993년 사이 1백 6십만 명이 독일로 이민을 왔다. 독일계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독일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독일 이민 요소의 네 번째 집단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난민 신청자와 난민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난민의 이주가 아프리카의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전 지구적 이주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의 4분의 1만이 제3 세계 출신인 것을 보면 독일의 난민 이주는 전 지구적 이주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난민 신청자들이 독일로 이주하게 된 주요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소요와 동유럽과 동남유럽 지역의 갈등이다. 독일의 난민 신청자 수가 정점에 달한 1992년에는 그 수가 43만 명에 이르렀다. 1992년의 독일 난민 신청자 수는 독일을 제외한 전체 유럽 국가의 수보다 많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소요와 갈등이 일어났으며 결국 독일 헌법의 난민 조항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다루겠다.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주민 집단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주민을 아우르는 집단이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 집단이 바로 이들 가족 이주민이다. 이 집단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7~8만 명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사증 신청자들이 가족 이주민 집단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독일은 가족 이주민 외에 전문 인력 이주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총 급여가 최소 약 8만4천 유로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2000명 미만의 전문 기술 인력만이 독

현재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 집단이 바로  
이들 가족 이주민이다.  
이 집단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7~8만 명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사증 신청자들이  
가족 이주민 집단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독일이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신조는 역사와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이 비이민 국가라는 기묘한 자기 정의는 독일 국민성의 인종 문화적 틀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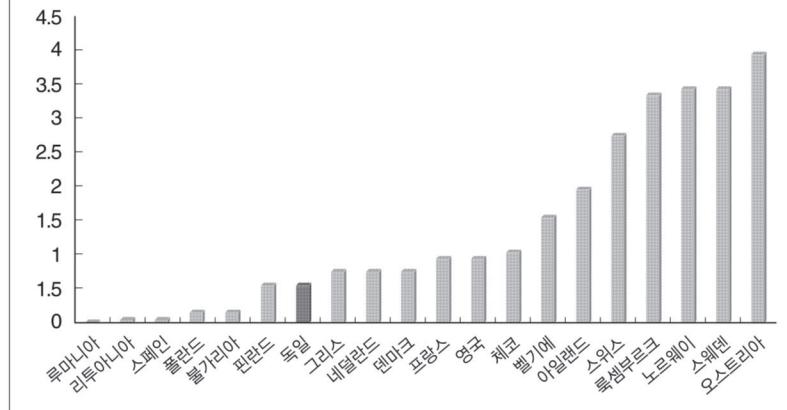
일 입국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는 다소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전문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단순 기술 노동자가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농업뿐 아니라 호텔과 요식업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매년 25만 명을 단기적으로 고용 한다.

흥미로운 세부 내용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독일의 오랜 이주 역사와 상당한 수의 이주민이다. 이주민 수에서 보듯 이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정치적 자기 부정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가와 이주 연구자들은 이러한 독일의 자기 부정에 대해 상당 기간 비판해 왔다. 이 비판들은 대부분 정당하고 옳다. 그러나 나는 정말 이 비판들이 규범적 측면에서의 자기 부정과 국가 정의의 토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이 이민 국가가 아니라는 신조는 역사와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이 비이민 국가라는 기묘한 자기 정의는 독일 국민성의 인종 문화적 틀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였다. 독일이 나치 체제에서 해방된 후에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는 독일의 분단이었고,

■ 2005년 국가별 난민 신청자 수 (단위: 천 명)



출처: SOPEMI

이에 따른 거대한 독일계 디아스포라의 형성이었다. 이러한 전개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불완전한 민족 국가임을 지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불완전함은 다양한 제도 영역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독일 헌법 대신 독일이 통일이 되어 완전한 국가가 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법이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라인강에 위치한 작은 지방 도시이자 통일 이전의 수도인 본(Bonn)을 기억할 것이다. 본은 연방공화국의 일시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법의 이전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권의 범위 안에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좀 별난 역사적 결과 중 하나로, 독일은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자행한 유대인 집단 학살로 인해 국가만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이러한 점에서 닮았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조국으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게, 독일은 독일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독일인의 조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기 정의의 결과로써 독일은 의미상 ‘귀향’으로 위장된 독일 민족 이민을 우선시하였다. 공산주의를 피해 온 독일계 이주민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본법 116조항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독일이 이민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국가 정체성을 재규정할 의무와 동유럽에 흩어져 있는 같은 민족에 대한 역사적 의무를 회복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의미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55년에서 1972년 사이에 고용된 이민자들은 초청 노동자로 불렸다. 초청 노동자는 실제로 독일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던 유일한 지위였다. 왜냐하면 크리스챤 조프의 말처럼 완수해야 할 국가 건설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봄 딜런의 식귀 “The Times They are a Changing”처럼 시

---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조국으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게, 독일은 독일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독일인의 조국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기 정의의 결과로써 독일은 의미상 ‘귀향’으로 위장된 독일 민족 이민을 우선시하였다.

---

민족 우선 이주 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93년 ‘전쟁후유증처리법’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모든 자에 대한 재정착 지위를 거부했다.

이는 독일계 이주민의 이민이 원칙적으로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은 지금 통일되었고, 국가 건설 문제도 해결하였다. 따라서 독일이 비이민 국가는 신조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일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a) 초청 노동자 배제 노력, b) 독일계 이주민 포섭의 두 접근 방식이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많은 정치적·법적 발전에서 목격하고 있다.

- 민족 우선 이주 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93년 ‘전쟁후유증처리법 (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모든 자에 대한 재정착 지위를 거부했다. 이는 독일계 이주민의 이민이 원칙적으로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재정착 지위 신청자에 대해서도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고, 연간 20만 건의 공식 퀘터 제한이 도입되었다. (1990년 대 후반에는 12만 건으로 축소되었다.)
- 이주 노동자와 이들의 자손에게도 시민권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2005년 이민법을 이끌어 낸 1991년의 외국인법은 귀화를 시민권에 접근할 ‘권리’로 보고, 기존의 임의적인 귀화 절차를 특정 거주 조건(혹은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대체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존의 주된 가시적 담론이었던 비이민 담론은 정치적 공간에서 사라졌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공부한 대학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2005년 사회통합 부서를 신설한 것을 아는 분도 있을 것이다. 독일 총리는 국가 통합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이주민 공동체와 대화를 시작했다. 물론 많은 진행 과정들이 상징적인 정치 영역에 속해 있으나 그렇다 하여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민족 국가 형성 프로젝트를 일찍 완성한 다른 국가들처럼 되어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은 정상화 과정을 뒤늦게 시작했다. 이 과정에 대한 다른 영역을 다루기 전에, 독일 이민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독일에 대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비이민 국가는 수사학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의미가 훨씬 약하다는 가정 하에 행동했다. 왜냐하면 비이민 국가 표방의 정치적 의도는 법체계상 부여된 강력한 권리와 보호로 인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법제도 관련 행위자와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외국인의 권리 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나치 시대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인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에 예속된다는 점과 이러한 개인의 권리 수여를 국적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표명한 강력한 헌법이다. 이처럼 법체계의 강력한 역할은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선 개인 후 국가”라는 기본 원칙은 국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묘사된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결과의 불일치로 이끌기 때문이다.

독일헌법은 보편적 인권의 국내법을 이행할 때 다른 어떤 헌법보다 앞서 가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외국인 법이 국익 우선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법 상의 개인 권리 우선 원칙은 국익 우선 원칙을 종종 보완하고 무효로 한다. 법원은 이민과 통합 정책을 압박하는 정치적 발의를 정정하고 철회시키는 많은 결정을 내렸다. 유권자의 다소 제한적인 선호도를 많이 혹은 적게 따랐던 이러한 발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고려하는 정치적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법적 개념은 “불가피성에 대한 법적 운명 (Rechtsschicksal der Unentzinnbarkeit)”이라 불리는 맥락에 있다. 비법률 용어로는 기본법이 이주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이주민은 독일인처럼 대우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국민 국가 형성”의 업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데서 오는 정치적 자기 부정과 다소 자유롭고 포괄적인 정책 결정 방식과 법원의 영향이 갖는 모순에 대해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정상화 과정에 대한 나의 가설로 돌아가자. 앞서 언급한 바

독일의 이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국민 국가 형성”의 업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데서 오는 정치적 자기 부정과 다소 자유롭고 포괄적인 정책 결정 방식과 법원의 영향이 갖는 모순에 대해 인식해야만 한다.

와 같이 민족 국가 형성이 완성되었을 때, 독일 정부는 이민에 대한 태도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상화 경향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더 자세하고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 영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이민 국가라는 유명한 독일의 주문(呪文)은 차츰 약화되고 있으며, 다음의 두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 1) 수많은 이민자의 존재
- 2) 독일 민족 국가 형성 프로젝트의 유지를 이유로 한 이민 국가 부정의 합리성 상실

요즘 모든 주요 정당이  
이민국으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정당들은 아직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심지어 독일의 보수 정당조차도  
독일이 사실상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다.

요즘 모든 주요 정당이 이민국으로서의 독일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정당들은 아직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심지어 독일의 보수 정당조차도 독일이 사실상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영역에서 언급할 만한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다. 독일 총리가 시작한 국가 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추가로 보수적인 내무부도 대화 창구(platform)를 만들기 위해 독일 회교단체와 독일 이슬람 회의를 시작했다. 기존의 이주민 담당 기관 책임자였던 가족부 차관이 장관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직제도 이제는 총리 직속 기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도 이민자 통합을 위한 이민자 지원이라는 정치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였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러한 발전이 이민자 지원을 위한 정치적 과제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의제로서의 독일의 이주 문제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관대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심지어 더 인상적인 발전은 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정상화 과정은 새로운 외국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91년, 즉 통일 직후에 시작되었다. 종종 과소평가되는 이 법의 성과는 귀화 자유재량 과정을 종식시킨 것과 특정 조건 하에서 귀화를 위한 법적 자격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정상화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1992년의 난민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독일 기본법을 제정한 많은 사람들이 나치 체제에서 자신들이 박해 당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난민 법이 유럽의 다른 제도와 비교할 만한 난민법으로 바뀌었다.

정상화는 무척 감사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특히 기준의 다소 관대했던 독일의 난민법을 잘라내고 유럽 기준으로 돌아가는 난민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쟁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하고 단일한 난민법 조항이 많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법으로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난민법의 이러한 변화는 정상화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영역의 세 번째 변화는 1993년 ‘전쟁 후유증 처리법’에서 기준에 민족을 근거로 하여 이민에 특권을 부여하던 경로를 폐지한 것이다. 법 개정의 결과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독일계 이주민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의 새로운 시민권법과 2005년의 새로운 이민법은 기준의 불완전한 민족 국가가 재구성되고 완전해짐에 따른 법 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이민법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귀화 체계에 출생지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독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고 18세가 되면 그들은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나는 이러한 예들이 독일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라고 여겨, 이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육, 과학, 스포츠 분야와 같은 많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독일처럼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실제로 다문화팀으로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다가오는 유럽챔피언십 독일팀 선수 중 5명의 공격수 전부가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많은 영역에서 뒤늦게 출발했다. 이것은 이주와 이주 정책 면에서 의미가 있다. 독일이 비록 빽빽기는 했지만 완

---

새로운 이민법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귀화 체계에 출생지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독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고  
18세가 되면 그들은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

전한 민족 국가를 형성했고, 지금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은 꽤 오랫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기본적인 제도 정착 면에서 독일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독일로의 이민은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관리 프로세서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캄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8 © by Frei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